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71

제안연월일: 2024. 11.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204호)	윤준병의원	2024.7.1.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8. 26.) 상정 후 제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2107호)	서천호의원	2024.7.22.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원회 회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472호)	정부제출	2024.9.30.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2024. 11. 12.)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원회 회부

-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 1.)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운영 중으로 국가는 '23년까지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 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2항·제14조·제17조·제20조·제26조·제28조 및 안 제19조 삭제).

법률 제 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휴양마을사업자에게"를 "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촌체험교육"을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체험교육"을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 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17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17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 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 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2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의 육성 및 지원) ① (생 략)	의 육성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②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	
<u>휴양마을사업자에게</u> 농어촌체	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	<u>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u>
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u>.</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u>농어촌체험교육의</u> 활성화)	제14조(<u>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u> 촌유학의</u> 활성화)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	
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	
도록 <u>농어촌체험교육을</u> 활성화	<u></u>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
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
	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u>」</u>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 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u>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u>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 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 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 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 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발・보급 등)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 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 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 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 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 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 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 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 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

-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 성 교육프로그램
-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
- 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 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로 한다.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시·도지 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 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 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 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u><삭 제></u>

제20	조(도	농교	류 및	농어	촌지	격개
발	전문	인력	등의	활용)	1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 ·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 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 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 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 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 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②
<u>제17조제3호에 따른</u> -
③

하기 위하여 <u>제17조제2항 및 제</u> <u>3항에 따라 인증받은</u> 농어촌마 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 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7 (생 략)

 - 1. · 2. (생략)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 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

<u>제17조제4호에 따른</u>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2. (현행과 같음)
<삭 제>
- 1 - 1

급

4. (생략)

-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 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 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 징 수한다.

4.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